

의안번호	2219054
의 퇴 인	정일영의원
회 답 일	2026. 7. 15.
추 계 번호	26B26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제2항) 1.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u><신 설> 2. 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u>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표 1] 도로 노선 지정·변경·폐지 타당성 검토(정기, 5년 단위)의 최근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실시연도	실시 결과		소요비용
2024 ²⁾	도로 노선 변경 (국도 승격)	평창 진부~강릉 성산 구간 지방도415호선 → 국도35호선 승격	100 ³⁾
		예천 효자~단양 대강 구간 지방도927호선 → 국도69호선 승격	
		태안 장산~태안 이원 구간 국지도96호선, 지방도603호선 → 국도38호선 승격	
		담양 담양 구간 국지도15호선, 군도8호선 → 국도29호선 승격	
		김천 덕곡~예천 예천 구간 지방도927호선, 지방도514호선 → 국도85호선 승격	
		국도28호선 시점 변경 영주시 영주동 → 상망동	
		군위 소보~청송 현동 구간 국지도68호선, 지방도927호선 → 국도16호선 승격	
		남해 창선~통영 도남 구간 국지도67호선, 지방도1024호선, 지방도1021호선 → 국도5호선 승격	
	도로 노선 변경 (국지도 승격)	평창 평창 구간 군도1호선 → 국지도82호선 승격	
		경주 천군~경주 강동 구간 지방도945호선 → 국지도19호선 승격	
		경산 중방~영천 금호 구간 지방도909호선, 지방도925호선, 지방도919호선 → 국지도14호선 승격	
		거제 고현~거제 연초 구간 지방도1018호선 → 국지도58호선 승격	

자료: 국토교통부

1)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2) 도로 노선 지정등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도로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는 2025년 7월 11일임

3) 2024년 도로 노선 지정등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한국교통연구원 수행) 비용

- 다만, 현행법⁴⁾은 정기적인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현행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따라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인 도로 노선 지정등 타당성 검토 외에 예외적으로 도로 노선 지정등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에 ‘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 실시 등⁵⁾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도로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 및 통계 등이 부재하고, 개정안은 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할 수 있다.

5)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건설·유지·보수 비용의 증감 또한 발생할 수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